

I. 작업추진 배경

- 보험회사간 가격경쟁을 통한 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를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제외)은 가격자유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임.
 - 또한 정부의 모집조직제도의 자유화정책에 따라 「손해보험 브로커(broker) 제도」가 도입되고 재보험자유화 조치에 따라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및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기됨에 따라 보험산업이 전면적인 자유화 시대로 전환됨
 - 현재 자동차, 장기, 상해 등의 가계성보험종목의 경우는 대부분 표준요율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화재보험 고액물건, 기술, 배상책임보험 등은 재보험자로부터의 구득요율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태이나
- 「국내사우선출재제도」와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의 폐지에 따라 국내사간 불공정 과당요율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보험시장의 부실화, 국내 보험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불신초래, 보험시장질서의 문란 등 전반적인 파행으로 이어지는 결과 초래
- 따라서 표준요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쟁」을 위해 표준요율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표준요율의 사용범위 확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속한 요율제공 및 보험요율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원보사의 실질적인 언더라이팅 능력제고라는 효용을 가져오게 됨.
 - 표준요율사용범위 확대외에도 외국의 요율체계를 답습하여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해소, 영문약관 및 구득요율에 대한 경쟁력제고 차원의 전면적인 표준요율체계 개편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됨

II. 표준요율 사용현황

화재·특종보험의 표준요율 사용실태

구 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기술보험
사용 범위	◦ 사용제한 없음. - 다만, 보험가입금액 300만불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영문약관사용 조건으로 구득요율 사용가능.	◦ 보상한도액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까지 ※ 생산물배상, 영업배상,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등 표준요율이 없는 종목제외	◦ 기계:가입금액 20억원 이하 ◦ 조립:가입금액 120억원 이하 ◦ 건설:가입금액 120억원 이하 ※ 상기 한도내에서도 다수특약 및 일부물건 제외
보험료 규모 (FY'95)	◦ 전체 3,718억원 중 2,560억원 (68.9%)	◦ 전체 754억원 중 252억원 (33.4%) ※ 근재보험 포함시 전체 1,791억원 중 1,289억원 (72.0%)	◦ 전체 1,032억원중 65억원 (6.7%) - 기계 : 3.3% - 조립 : 13.4% - 건설 : 1.7%

□ 화재보험계열 상품 요율적용 현황

1997. 3월 기준

화재계열 주요약관	표준요율	구득요율	비 고
●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 화재보험 보통약관 ● F.O.C(F) POLICY FORM ● 재산종합보험 ● 동산종합보험	○ ○ ○	○ ○	- 가입금액제한 없음 - “ - 보험가입금액 300만\$ 이상 물건적용 - 해외재보험자요율 구득가능 - 화재보험 표준요율 준용

※ 화재보험 영문약관 사용제한 [보험 1233-189 ('73.2.21)]

영문화재보험약관의 내용은 다음 물건에 한한다.

1. 부보물건의 보험금액이 3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업체나 합작투자
3.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 소유의 보험목적

□ 배상책임보험상품 요율적용 현황

배상책임보험 주요약관	표준요율	구독요율	비 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		- LOL 10억원까지 제시
● 선주배상책임보험	○		- “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		- “
●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		-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 “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 “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등		○	- 대상물건 제한없음

□ 기술보험상품 요율적용 현황

기술보험 주요약관	표준요율	구독요율	비 고
● 기계보험(국문)	○		- 보험가액20억원 초과시 구독요율
● MACHINERY INSURANCE POLICY	○		- “
● ELECTRONIC EQUIPMENT INS. POLICY		○	- 가액제한없음
● 조립보험(국문)	○		- 보험가액120억원 초과시 구독요율
● ERECTION ALL RISKS POLICY[서독식]	○		- “
● CONTRACTS WORKS INS. POLICY[영국식]		○	- 가액제한없음
● 건설공사보험(국문)	○		- 보험가액120억원 초과시 구독요율
● CONTRACTORS' ALL RISKS INS. POLICY[서독식]	○		- “
● CONTRACTORS' ALL RISKS INS. POLICY[영국식]		○	- 가액제한없음

Ⅲ. 표준요율 개선작업 추진

1. 경과내용

- '96.12.17 : 화재특종보험 표준요율 개선작업 추진 발의[화특부장회의]
- '96.12.27 : 실무작업을 통한 시안마련 합의[임원회의]
- '97. 1 : 개선작업 방향관련 시안마련[1차 실무작업반]
- '97. 1.24 : 개선작업방향 확정 및 2차 작업반 구성[임원회의]
- '97. 2~5 : 2차 작업추진[3개작업반]
- '97. 3.14 : 작업추진 현황 협의 및 작업반 협조요청[화특부장회의]
- '97. 3.18 : 개선작업추진현황 중간보고[임원회의]
- ※'97. 4.10 : 공정경쟁질서 확립방안관련회의[감독원, 부기관장회의]
- '97. 4~5 : 표준요율개선(안) 협의 및 의견수렴[화재, 배상, 기술보험과장회의]
- ※'97. 5.27 : 자유요율적용대상 국문화 추진관련회의[감독원, 화특부장회의]
- '97. 6.27 : 표준요율개선(안) 협의 및 기술보험부문 보완요청[화특부장회의]
- '97. 7 : 기술보험부문 보완작업 추진(작업반)
- '97. 7.29 : 표준요율개선 보완(안) 합의[화특부장회의]

[참고] 손보사 공정경쟁질서 확립방안

- 추진기관 : 보험감독원
- 주요내용(요율부문)
 - 요율적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율적용의 간편화, 합리화
 - 구득요율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요율적용대상 확대추진
 - ▶ 화재보험 : 25억원 ⇒ 1,500억원
 - ▶ 배상책임 : 10억원 ⇒ 30~50억원
 - ▶ 기술보험 : 20, 120억원 ⇒ 1,000억원
 - 표준요율 적용 유사위험에 대한 해외구득요율 적용금지

- 해외재보험자 요율구득 적정성 확보
 - ▶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에 구득요율의 적정성 확보조항 신설 건의
 - ▶ 우량한 해외재보험자와 거래토록 지도(S&P 평가등급 활용)

2. 주요 개정내용

가. 총괄

- 표준요율 적용대상 확대

- 화재 : 보험가입금액 24억원 → 1500억원(영문계약)
- 배상 : 보상한도액 1억원/인당, 10억원/사고당 → 5억원/인당, 10~30억원/사고당
- 기술 : 보험가입금액 20억원~120억원 → 1000억원

- 표준요율 적용기준

◦ 화재보험

- 국문, 영문약관 사용가능
- 영문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1500억원이하의 경우 표준요율 준용

◦ 배상책임보험

- 국문, 영문약관 사용가능
- 표준요율은 국문약관에만 적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표준요율의 경우 내수용에만 적용

◦ 기술보험

- 국문, 영문약관 사용가능
- 영문약관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억원 이하의 경우 표준요율 준용

- 보통약관, 표준약관보완 · 신설

- 화재보험보통약관보완, 특약신설

- 기술보험 특약신설
- 전자기기보험신설
- 효율체계 개선
 - 화재보험 효율체계 개선(최저보험료 인상, 할인할증 단순화 등)
 - 배상책임보험 효율체계 개선(최저보험료 인상, 구득요율 표준화 등)
 - 기술보험 효율체계 개선(고액할인신설, 구득요율 표준화 등)

나. 개정효과

- 표준요율 적용대상 확대(FY'96 기준)
 - 화재보험
 - 보험료기준 : 74.0% → 87%
 - 계약건수기준 : 99.4% → 99.9%
 - 배상책임보험
 - 보험료기준 : 38.5% → 54.4%
 - 계약건수기준 : 73.2% → 96.0%
 - 기술보험
 - 보험료기준 : 6.3% → 30.3%
 - 계약건수기준 : 77.0% → 96.1%

[참고] FY'96 실적 중 개정대상 보험종목 현황

보험종목	계약건수	보험료(억원)
화재보험	402,182	3,429
배상책임보험 중 일반배상	35,784	774
기술보험	4,749	1,431
합 계	442,715	5,634

주) 화재보험 계약건수에는 창고물건실적이 제외됨

다. 시행시기

- 1997.10. 1 시행예정
- 시행시기는 효율체계개선 등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보완, 효율서 인쇄, 교육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인가일 이후 1개월정도 경과된 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업계의견을 반영, 신고수리시 시행일을 '97.10. 1로 건의할 예정

IV. 기타사항

1. 표준효율 적용관련

가. 화재보험

☐ 화재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국문약관 및 영문약관 적용규정 통합
- 영문약관 적용계약의 재보험자 구독요율 사용근거 마련

☐ 화재보험 효율서

- 표준효율 준용규정
- 신위험요율 적용방법

나.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재보험자 구독요율 사용근거 마련

☐ 배상책임보험 효율서

- 표준효율 준용규정
- 신위험요율 적용방법

다. 기술보험

□ 기술(공사관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영문약관 적용계약의 재보험자 구독요율 사용근거 마련

□ 기술(공사관련)보험 요율서

- 표준요율 준용규정
- 신위험요율 적용방법

2. 분납특약관련

가. 구간보험

납입유예 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유예기간동안의 법정이자 할증

나. 기간보험

분할납입에 따른 할증(2회 : 3%, 4회 : 5%)

적용보험료 20만원 이상인 계약

다. 서면통지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3. 경험통계 집적관련

가. 경험통계의 중요성

나. 기초통계작성요령 정비

- 표준요율 비적용 위험의 코드화
- 불합리한 코드의 보완
- 화재보험 기초통계 작성요령 정비
- 배상책임보험 기초통계 작성요령 정비

- 기술보험 기초통계 작성요령 정비

4.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종합보험

- 약관 및 요율산출(안) 작성완료
- 인가신청
- 판매시기
- 공동상품

나. 재산종합보험(P.A.R)

- 향후 대책 모색

다. 향후 예상작업

- 종합보험 요율체계 정비
- 배상책임보험 약관 정비

라. 기타사항

- 언론에 대한 보안 유지
- 계약자에 대한 설명

【제 2 주제】

화재보험 표준요율개선작업내용 및 시사점

동 부 화 재 (주)

화특부 차장 이 금 수

I. 작업추진방향

화재보험상품의 경쟁력 및 효율산출의 용이성 확보를 통한 상품판매력의 제고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원보험자 중심의 효율산출 토대 마련
 - 고액계약에 대한 표준효율신설을 통하여 국내사간 불공정한 가격경쟁의 억제
제를 유도하고, 원보험효율의 재보험자 산출이라는 국내 보험산업의 후진
성을 극복하고 원보험효율은 원보험자가 산출하는 토대를 마련.
-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의 활성화 도모
 - 화재특종보험은 타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보험종목으로
원보사에 의한 효율산출 및 적용이 확대됨으로서 국내 원보사의 언더라이
팅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
- 효율산출의 용이성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보험판매 유도
 - 모집조직에서 이해하지 쉬운 형태로 표준효율체계를 전환함으로써 적극적
인 상품판매를 유도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
- 효율체계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산출의 전산화 기반 구축
 - 표준효율체계를 단순화하여 효율산출의 전산화를 가능토록하여 현장 중심
의 계약인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II. 주요 개정내용

1. 약관

1) 전기위험담보관련

- 전기위험부담보추가약관을 삭제하고, 전기위험담보특약의 내용을 보통약관화, 전기위험담보특약을 순수한 전기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

2)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약의 보통약관화

- 추가보험료 없이 담보해주는 현행의 잔존물제거담보특약을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보통약관화

3) 추가약관의 보통약관화

- 별도로 첨부해야되는 추가약관을 보통약관에 포함

4) 일부 특약의 도입

○ 주택화재보험

- 붕괴, 침강 및 사태담보특약, 폭음파담보특약,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특약,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 자기부담금특약

○ 화재보험

- 자기부담금특약

5) 일부 특약내용의 수정

○ 화재보험

- 붕괴, 침강 및 사태담보특약(담보범위의 명확화)

6) 일부 특약의 삭제

- 장기계약특약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변경

가. 예정율에 관한 사항

- 일반물건 예정기초율 변경 : 예정손해율을 40%→50%

예정사업비율 55%→45%

나. 보험료계산에 관한 사항

1) 국문약관 및 영문약관 적용규정 통합

- 사용약관(국문 또는 영문)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통합하여 사용약관에 관계없이 보험료의 계산은 현행 화재보험 표준요율서에 따르도록 일원화

2) 영문약관 적용계약의 사용근거 마련

- 일정규모(1증권당 가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의 대형 위험물건으로서 충분한 담보력 및 위험분산(해외재보험처리)이 필요한 물건에 대하여는 재보험자와 협의한 요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제도적으로 영문약관의 사용제한을 폐지하고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증권을 발급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물건을 제외하고는 보험료의 산출을 현행 국문화재보험요율서에 따르도록 규정

3. 요율서

가. 통칙규정의 변경

1) 요율의 적용범위

- 국문화재보험약관 이외의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화재보험표준요율조건과 담보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보차이를 감안 표준요율을 준용하는 근거 마련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1500억원 이하의 계약에도 영문약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요율은 화재보험표준요율을 기준으로 수정사용할 수 있는 다수약관 1요율 체계로 개정

2) 요율의 조건

- 유사한 요율이 없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토록 한 규정을 개발 원에 의뢰하여 제시받은 요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매년 표준요율 산출시에 동 제시요율을 요율서에 반영하여 요율적용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규저완화 시행

3) 최저보험료 인상(2000원▶5000원)

- 최저보험료를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보험료 단수처리를 10원단위에서 절사하여 100원단위로 표시하도록 개정

4) 년납장기계약할인 폐지→계속계약할인 신설

- 장기계약특별약관의 폐지에 따라 관련 요율규정을 폐지하고 동일보험자에 갱신하는 계속계약에 대한 할인율(5%)를 신설

나. 건물규정의 변경

1) 일반형태의 건물구조급별 판정의 단순화

- 건물구조급수 판정기준이 되는 주요구조부재(6개)를 4개로 축소하고 외벽의 두께를 고려하지 않게 하므로써 건물구조의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정

2) 유리벽(금속판)건물규정의 폐지

- 유리벽 또는 금속판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건물구조급수를 판정하므로써 구조급수 판정의 용이하도록 개정

3) 가연내장재건물의 건물규정 폐지

- 건축법을 고려 가연내장재 건물에 대한 건물구조급수 판정기준을 폐지함으로

서 건물구조급수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정

4) 복합구조건물

- 효율적용을 열급기준으로 할인하는 형태에서 우급기준으로 할증계수를 적용하는 형태로 개정하여 적용방법을 단순화

다. 물건분류체계의 변경

1) 4개물건규정 → 3개물건규정으로 단순화

- 창고물건규정을 일반물건으로 흡수

2) 일반물건 작업할증물건 → 공장물건

라. 기본효율체계의 변경

1) 주택, 일반, 창고물건의 등지효율체계 폐지

- 현행 등지체계를 폐지하고 전국을 단일 등지로 구분하여 효율구분요소를 줄여 효율적용의 간편성을 도모

2) 공장물건 공장종별효율체계의 변경(작업공정별효율 ▶ 최종생산품별 효율)

- 자유소율제도에 부합하도록 적용효율단위를 최종생산품으로 단순화시켜 보험 계약업무를 간소화하고 공정상의 특이위험은 보험인수시 범위효율폭내에서 차등화함으로써 위험의 차별화 도모

마. 할증효율체계의 변경

1) 일반물건 직업할증 폐지 ▶ 기본효율화

- 직업할증요율을 기본요율화하고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을 준용하여 업종구분을 세분, 재구성

2) 위험품할증 폐지 ▶ 기본요율화

- 위험품할증 적용대상물건 요율에 위험품할증율을 포함시켜 표기하고 위험품할증율을 폐지

3) 동산할증 ▶ 재고자산할증(명칭변경)

- 동산할증 대상물건을 단순화하고 할증명칭을 재고자산할증으로 변경

4) 손해율할증(공장물건) 폐지

바. 할인요율체계의 변경

1) 불연내장재 할인 보완

- FILK인증품 내장재할인은 불연내장재로 한정하고 동 할인대상에서 내벽을 제외하며 이에 따라 할인율을 인하조정

2) 방화문할인 폐지

3) 고액할인을 적용확대 (10% ▶ 23%)

- 영문계약의 국문전환 또는 표준요율준용으로 발생하는 고액계약자에 대한 요율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액할인 적용범위를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1조원까지 확대

4) 소화설비할인의 변경

- 소화설비 주요구성품을 FILK인증품으로 시설할 경우 일정할인율을 추가하여 적용하는 추가할인규정 폐지
 - 기존의 추가할인율 규정 폐지에 따른 한시적 보완조치로 2000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주요구성품을 FILK인증품으로 할 경우 할인율의 30%를 추가할

인 할 수 있도록 함(부칙)

- 일정 시점이후에 신규로 소화설비가 시설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주요 구성품이 FILK인증품인 경우에 한하여 소화설비 할인 적용
 -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요구성품이 국가검정품으로서 소화설비할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할인율의 70%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부칙)
 - 일정시점 이후의 신규시설 소화설비기준은 2000년 4월 1일을 이후 화재보험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물건을 기준함(부칙)

사. 특정물건 요율체계의 변경

- 기본요율과 연계된 특정물건 요율체계를 기본요율과 분리하여 별도의 체계로 개정

아. 특약요율체계의 변경

1) 물건별 특약요율체계를 통합하여 별도 체계로 정리

2) 특약신설에 따른 요율신설(주택화재)

- 신설특약에 대한 특약요율을 신설

3)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요율체계의 변경

- 기초요율 산출시 바닥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물위험의 가입금액으로 가중평균한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
- 재물위험에 실손보상특약이 첨부된 경우 기초요율산출방법 보완
- 기업휴지위험에 대하여도 실손보상개념을 도입하고, 석유공업물건과 비석유공업물건으로 구분되어 있던 약정복구기간계수를 단일화

III. 개정효과

1. 화재보험 공정경쟁기반 조성 및 U/W 능력배양 토대 마련

- 화재보험 표준요율 적용범위
 - 보험료기준 : 74.0% → 87.0%
 - 계약건수기준 : 99.4% → 99.9%

2. END USER의 요율적용의 용이성 확보

- 요율체계를 요율서 최종사용자의 적용요율산출 및 요율적용이 용이하도록 개편함으로써 화재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구축

3. 적용요율산출의 전산화 토대 마련

- 현행 요율서 체계를 전산화 가능한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휴대용컴퓨터를 이용한 요율산출이 용이하도록 하여 요율서 없는 계약인수의 토대를 마련

4. 언더라이팅 기능의 활성화 기반 구축

- 공장물건의 업종분류체계를 작업공정별 체계에서 최종생산품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위험공정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의 활성화 유도

5. 요율체계의 합리성 확보

- 기본요율 및 할증·할인체계 정비로 요율체계의 합리성 확보

6. 표준요율의 적용성 확보

- 고액계약에 대한 할인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험관리가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되는 고액계약의 국문약관으로의 전환 유도

7. 경험통계 확보기반 마련

- 표준요율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가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량의 신뢰성이 확보되며 표준화에 따른 통계처리 용이

IV. 세부 개정내용

1. 약관

1) 전기위험담보

○ 현행

- 현행 약관상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기기, 장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기위험부담보추가약관을 첨부하여 동 목적물에 대한 전기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는 화재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위험담보특약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적사고로 인한 해당 목적물에 화재손해(그을음손해 포함)를 담보하도록 하고 있음.

전기위험부담보추가약관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말미암아 화재손해(그을음손해 포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16.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문제점

- 따라서 전기위험담보특약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전기적사고위험 그 자체는 담보하고 있지 않으나 동 특약의 명칭이 전기적사고 자체를 담보하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 개선(안)

- 현행 전기위험부담보추가약관을 삭제하고 전기위험담보특별약관의 내용을 보통약관으로 옮겨 추가보험료 없이 전기적사고로 인한 화재손해를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전기적위험 그 자체를 담보하는 특약을 제정함.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16.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약의 보통약관화

○ 현행

- 현행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약은 추가보험료 없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제의 잔존물제거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안에서 보험목적에 대한 실제의 잔존물제거비용을 화재보험보통약관 16.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문제점

- 동 특약은 추가보험료가 없어 동 특약의 첨부가 보험회사의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잔존물제거비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잔존물처리에 오염처리비용까지 담보되는 것으로 계약자가 인식하여 과대한 잔존물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안)

- 동 특약의 내용을 보통약관으로 옮겨 모든 계약자가 잔존물처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특약부대의 여지를 없애고, 잔존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용어정의의 도입과 동시에 그 처리비용의 한도를 설정함.
- 잔존물처리비용에 대한 용어정의 : 잔존물처리비용을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오염물질제거비용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잔존물처리비용의 한도 : 동 비용은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통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가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목적에 대한 실제의 잔존물제거비용(잔존물제거비용이라 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을 말하며 청소비용에는 오염물질제거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을 16.에 정한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추가약관의 보통약관화

○ 현행

- 현행 약관체계는 보통약관과 추가약관 그리고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추가약관은 보험계약 및 보험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화재보험(산립화재보험)추가약관은 제외)

- 선계약추가약관
- 작업금지추가약관
- 위험품추가약관
- 화기금지추가약관
- 냉동(냉장)위험부담보추가약관
- 소화설비할인추가약관
- 공지할인추가약관
- 신규특수건물의안전점검전선계약추가약관
- 화재보험(산립화재)추가약관

○ 문제점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성질 및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동 추가약관을 첨부하여 인수하여야 하나 추가약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약관의 첨부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개선(안)

- 동 추가약관을 보통약관의 추가조항으로 옮겨 보험증권에 기재하는 번거로움

을 해소하고 현행 화재보험(산림화재보험)추가약관의 명칭을 산림화재위험담보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여 동 추가약관은 보통약관의 추가조항에서 제외함.

- 선계약추가조항
- 작업금지추가조항
- 위험품추가조항
- 화기금지추가조항
- 냉동(냉장)위험부담보추가조항
- 소화설비할인추가조항
- 공지할인추가조항
- 신규특수건물의안전점검전선계약추가조항

4) 일부 특약의 도입

○ 붕괴, 침강 및 사태담보특약(주택화재)

-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인가된 동 특약을 주택화재보험에서 신설함.
- 화재보험의 동 특약은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가 없는 영문약관인 FOC(F)의 내용을 근거로 도입되었으나 영국에서는 동 위험에 대한 정의가 판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현재 국내의 동 위험에 대한 판결이 없는 상태하에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화재보험의 동 특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여 구체화함.

- 신축물의 통산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 보험기간 시작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 참고 : 해외에서의 붕괴,침강,사태담보 약관내용

① 영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목적물이 아닌 대지, 주차장, 도로, 담, 대문 및 울타리에 대한 손해
- 다음의 원인으로써 생긴 붕괴손해
 - 완성된 건물의 정상적인 내려앉음
 - 인공으로 조성된 대지의 내려앉음이나 지각운동
 - 해안이나 강의 침식
 - 설계부실,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 화재, 지하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누출
- 보험기간전에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 파괴, 보험목적물의 구조변경이나 수리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 기초공사나 굴토작업으로 인한 손해

② 미국(보상하는 손해)

- 재물보험의 Basic Form
 - 함락공붕괴(Sinkhole Collapse) : 석회석이나 이와 유사한 바위 위에 물의 작용으로 형성된 지하의 빈공간으로 건물이나 땅이 갑자기 내려앉는 것
- 재물보험의 Broad Form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식
 - 곤충이나 해충에 의한 붕괴
 - 건물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재산의 하중
 - 부실재료의 사용, 부실시공(단, 건설공사중의 붕괴만 담보)

◦ 폭음파담보특약(주택화재)

-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인가된 동 특약을 주택화재보험에서 신설함.

◦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특약 (주택화재)

-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인가된 동 특약을 주택화재보험에서 신설함.

◦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주택화재)

-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인가된 동 특약을 주택화재보험에서 신설함.

◦ 자기부담금특약(주택화재, 화재)

- 소액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그 손해를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로 현행 약관에서는 도입되어지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는 소액사고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을 함에 따라 지급보험금보다 손사비가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동 특약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일부

해결하고자 함.

5) 일부 특약내용의 수정

- 붕괴, 침강 및 사태담보특약(화재보험)
 - 보상하는 손해(주택화재보험의 내용과 동일)

6) 일부 특약의 삭제

- 장기계약특약
 - 장기년납계약에 대한 특약규정으로 2, 3차년도 개시 이후에도 2차 또는 3차년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시 법원은 동계약을 분납계약으로 인식하고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동 특약을 삭제함.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변경

1)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 현행

- 국문화재보험의 예정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율
주택물건	영업보험료의 40%	영업보험료의 55%	영업보험료의 5%
일반물건	영업보험료의 40%	영업보험료의 55%	영업보험료의 5%
공장물건	영업보험료의 60%	영업보험료의 35%	영업보험료의 5%
창고물건	영업보험료의 60%	영업보험료의 35%	영업보험료의 5%

○ 문제점

- 경험통계에 의하면, 주택물건 및 공장물건의 실적율은 예정율과 각각 3.8%, 5.3%의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물건과 창고물건의 경우에는 각각 7.7%, 45%로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창고물건의 경우에는 대형사고의 개연성이 커 통상 안전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세화물을 제외한 계약은 매우 작으므로(FY'95 597건) 실적이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예정손해율이 60%인 창고물건이 일반물건으로 흡수됨에 따라 일반물건의 예정손해율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개선(안)

- 일반물건 예정손해율을 50%, 예정사업비율을 45%로 조정함.

2) 보험료계산에 관한 사항

○ 현행

- 현행 화재보험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국문약관, 국문약관에 대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영문약관, 영문약관에 대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음.

- 국문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보험료의 계산은 별표의 현행 국문 화재보험요율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문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보험료의 계산은 재보험자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문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문요율서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며,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자에게 구득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음.

◦ 문제점

- 현행 기초서류상에서는 동일한 화재위험에 대한 요율이 독립적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의 사용에 따라 납입보험료에 상당한 격차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국·영문요율의 이중구조의 심화는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계약인수에는 유리하나 장기적으로 지급불능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요율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개선(안)

- 사용약관의 국문 혹은 영문여부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 사용약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여 사용약관에 관계없이 현행 화재보험요율서에 따라 산출된 요율을 표준요율로 사용하도록 함.
- 다만, 일정규모(1증권당 보험가입금액 1500억원) 이상의 대형 위험물건으로서 충분한 담보력 및 위험분산(해외재보험처리)이 필요한 물건에 대하여는 재보험자와 협의한 요율을 사용토록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요율서

가. 통칙규정의 변경

1) 요율의 적용범위

○ 현행

- 현행 화재보험요율서의 요율 및 조건 또는 규정은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라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약관사용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산출방법서를 운영토록하고 1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 초과계약에 대해서만 구독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증권당 1500억원 이하의 영문계약에 대한 요율적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선(안)

- 국문약관 이외의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문약관과 국문약관의 조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화재보험 표준요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준용방법

- 영문약관과 국문약관의 담보조건, 지급조건 등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문약관을 기준으로 영문약관의 제 조건을 일치시킨후 국문요율을 적용함.
- 국문요율을 사용하므로 기존 영문요율에는 적용치 않았던 특수건물할인, 고액할인, 우량물건할인율 등이 적용되어짐.
- 우량할인율의 적용은 영문계약으로 동물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우량할인율이 산출되어지지 않은 경우 화협에 현장조사를 의뢰하여 새로이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량물건할인규정을 변경할 예정임.

※우량물건 할인율은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과거 5개년간의 평균손해를 40% 이상이며 보험가입 경과년수가 1년 이상인 물건에 대하여 전년도에 우량물건 현장조사를 의뢰하고 당년도에 할인율을 산출하여 차년도 4월 1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문계약으로 현장조사가 의뢰되지 않는 공장물건에 대하여는 국문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우량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영문약관과 국문약관의 제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2)의 요율의 조건」에 의하여 요율적용에 대하여 개발원에 의뢰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요율의 조건

○ 현행

- 화재보험 요율서상 요율서에 없는 요율은 유사한 요율을 따르고 유사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동 요율서에 없는 요율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인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요율적용이 어렵게 됨으로써 국문상품으로 인수가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영문상품을 사용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 국문상품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안)

- 따라서 유사한 요율이 없는 경우 개발원에 의뢰하여 제시받은 요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매년 표준요율 산출시에 동 제시요율을 요율서에 반영하여 요율적용의 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직적인 국문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표준요율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문약관에 없는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개발원에서 신속한 요율산출 및 제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적용요율의 계산

○ 현행

- 적용요율의 계산시 단수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단수처리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보험료 계산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산처리상의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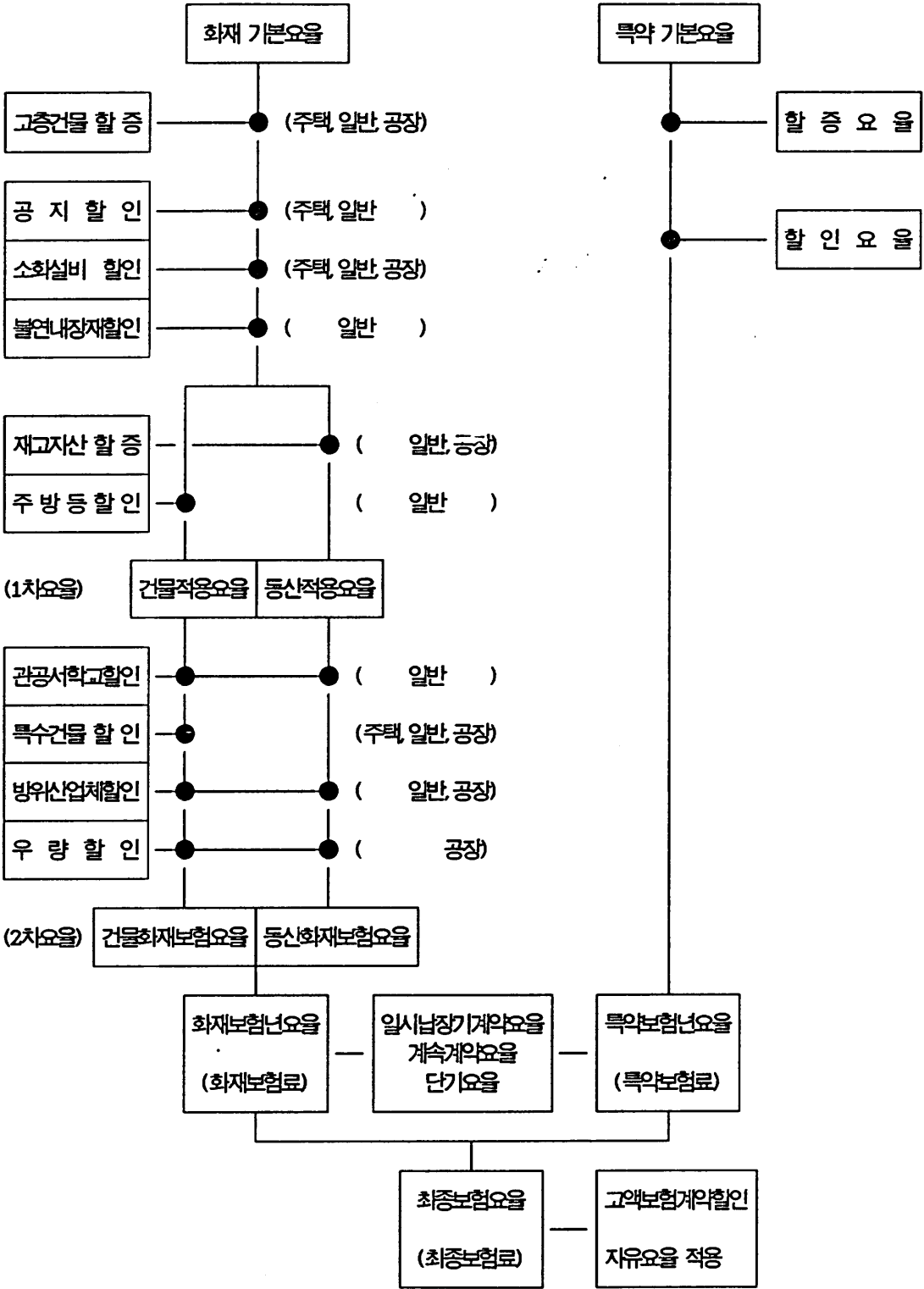
○ 개선(안)

- 적용요율을 백분율단위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고 확정보험료를 10원단위에서 절사하여 100단위로 적용함.

4) 요율적용 순서도

- 요율적용체계의 변경에 따라 순서도를 변경하고 특약요율을 별도로 구성함.

<요율적용 순서도>



① 1차요율 계산

건물적용요율=기본요율×(1+고층건물할증)(1-공지할인)(1-소화설비할인)(1-주방등할인)

동산적용요율=기본요율×(1+고층건물할증)(1-공지할인)(1-소화설비할인)+재고자산할증

② 2차요율 계산

건물화재요율=건물적용요율×(1-관공서학교할인)(1-특수건물할인)(1-방위산업체할인)(1-우량물건할인)

동산화재요율=동산적용요율×(1-관공서학교할인)(1-방위산업체할인)(1-우량물건할인)

③ 최종보험요율 계산

최종보험요율={ 화재보험년요율×일시납장기계약요율(계속계약요율,단기요율)
+ 특약보험년요율×일시납장기계약요율(계속계약요율,단기요율)}
×(1-고액할인율)(1-자유요율)

※ 화재보험년요율=건물화재보험요율+동산화재보험요율

5) 최저보험료

◦ 현행

- 최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며, 손해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현재 2000원(1984년 변경)임.

◦ 문제점

- 최저보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 보험상품은 그 상품이 우수하더라도 모집조직에서의 적극적인 판매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음. 가계성보험에 대한 수요자의 위험인식이 변하고 있으나 판매조직에서 판매에 따른 충분한 급부가 제공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판매가 권유되지 않게되고, 따라서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됨.

◦ 개선(안)

- 따라서 최저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주택물건에 대한 영업조직에게 상품을 판매할 유인을 제공하여 가계성보험의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00원으로 인상함.

6) 년납장기계약할인→계속계약할인

◦ 현행

- 장기계약특약에 따라 3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3차년도의 보험료를 5% 할인하고 3차년도 보험료 납입시 1차년도의 보험료중 5%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함으로서 매 연도의 보험료를 5%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장기계약할인은 보험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의 절감부분을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제도임.

◦ 문제점

- 장기계약특약의 삭제에 따라 기존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계약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개선(안)

- 동일한 보험회사와 동일구내 위험에 대하여 계속하여 1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자에게 년요율의 5% 할인함.

7) 보험기간 중의 보험료의 추징 및 환급

◦ 현행

- 보험기간 중에 기 계약기간을 만기일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의 산출은 일할계산토록 하고 있으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요율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상 통칙규정의 단기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위험의 추가나 삭제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위험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특히 풍수재위험과 같이 계절적인 요인이 강한 경우에는 역선택의 가능성의 더욱 크므로 7,8,9월이 포함되는 경우 각 월에 10%를 추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과 담보위험을 추가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으나,
- 담보목적물을 추가하거나 기존 담보목적물의 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과 목적물에 대한 담보위험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계약을 기준으로하여 볼 때 추가담보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시의 추가보험료는 일할계산하며, 특약의 추가는 단기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안)

- 따라서 담보위험의 추가임에도 일할계산하여 가입금액의 증액시의 추가보험료 계산과 형평을 이루도록 함.
- 그러나 계절적 요인이 있거나 역선택의 위험이 커 특약별로 단기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특약은 현행과 동일하게 단기요율을 적용토록 함.

8) 추가약관조항

○ 현행

- 현행 추가약관조항은 계약 및 보험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추가약관을 첨부방법이 규정되어 있음.

○ 개선(안)

- 추가약관이 보통약관으로 흡수됨에 따라 동 추가방법을 약관에 명시하고 요율서 규정에서는 삭제함.

나. 건물규정의 변경

1) 일반형태의 건물구조급별

◦ 현행

- 현행 일반형태의 건물의 구조급별은 건물의 주요구조부재(기둥,보,바닥,계단,지붕,외벽)의 내화성능에 따라 4개 구조급별로 건물급수를 판정하고 있음.

◦ 문제점

- 현행 규정상 건물구조 판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판정기준이 6개의 건물주요구조부재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외벽의 경우 판정기준에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 여부에 벽두께가 달리 규정되어 실제 건물구조를 판정하는데 상당한 경험 이 필요하게 됨.

◦ 개선(안)

- 따라서 건물구조급수 판정기준이 되는 주요구조부재를 4개로 축소하고 외벽이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을 구분하지 않고 두께를 고려하지 않게 하므로써 건물 구조의 판정이 용이하도록 함.

급 별	기 둥 / 보	지 붕 (틀)	외 벽
1 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콘크리트,조적조
2 급	내화구조	불연재료	콘크리트,조적조
3 급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 급	상기 이외의 것		

- 외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유리(금속판,석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상기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일반건물규정에 유리벽건물규정을 포함시킴

2) 유리벽(금속판)건물 규정 폐지

◦ 현행

- 통상 고층건물은 건물의 경량화 및 외관의 미를 고려하여 외벽을 유리 또는 금속재의 커튼울(비내력장막벽)로 축조하는 경우가 많음.

- 건물의 외벽면 중 일면의 유리(금속판)면적이 그 외벽의 70%이상인 건물로서 유리부분의 면적이 전체 외벽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유리벽을 제외하고 판정한 건물구조급수가 1급인 경우 1.5급, 2급인 경우 2.5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건물구조의 판정기준에 외벽이 포함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연소에 대한 노출 위험과 건물자체의 연소확대위험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임.
- 유리벽건물의 건물구조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1면의 유리벽면적이 70%를 초과하는지 여부 및 전체 외벽중 유리벽면적이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 복잡성이 있으며, 유리벽 자체가 통상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유리에 비하여 내화성능이 우수하므로 유리벽부분을 제외하고 건물구조급수를 판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선(안)

- 일반건물규정유리벽 또는 금속판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건물구조급수를 판정하므로써 구조급수 판정의 용이성을 부여함.

3) 가연내장재건물의 규정 폐지

○ 현행

- 가연내장재건물은 내벽 및 천정의 총면적의 50%이상을 가연재료로 피복한 건물로 건물구조급수가 1급인 경우 1.5급을, 2급인 경우 2.5급을 적용토록하고 있음.

○ 문제점

- 가연내장재건물에 대한 구조급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벽 및 천정의 가연재료구성면적이 50%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또한 내장재가 가연내장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무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가연내장재건물은 그것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장기간의 업종별의 경험통계로 반영되고 있음.

◦ 개선(안)

- 가연내장재건물에 대한 건물규정을 삭제함.

4) 복합구조건물

◦ 현황

- 2종이상의 서로 다른 구조로 된 하나의 건물로서 상호간 방화구획이 안된 경우 최열급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하나의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30%이하인 건물에 대하여 우급과 열급부분으로 나누어 급수조합형태 및 열급바닥면적에 따라 최열급구조요율에 최대 30%까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복합건물은 우급과 열급으로 구분하여 우급은 최우급부터 순서적으로 각종 바닥면적을 합계하여 복합구조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70%에 도달하는 때의 급수로 정의되고 열급은 최열급의 구조급수로 정의하여 우급에 열급의 바닥면적의 비율에 따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 적용요율 역시 열급구조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율적용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안)

- 요율적용을 열급구조를 기준으로 할인하는 형태에서 각 구조별 바닥면적비율에 의한 가중평균요율에 열급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증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적용요율을 인하하고 적용방법을 단순화함.

열급바닥면적비율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할증계수	1.1	1.2	1.3

< 계산 예 >

예1)

1급 140㎡ (70%)	4급 60㎡ (30%)
---------------------	--------------------

건물구조: 1급(우급)
 우급구조의 바닥면적: 140㎡
 열급구조의 바닥면적: 200㎡ - 140㎡ = 60㎡
 열급면적 바닥비: 60㎡ / 200㎡ = 30%
 적용요율 = [1급요율 × 70% + 4급요율 × 30%] × 1.3

예2)

1급 130㎡ (65%)	3급 40㎡ (20%)
	4급 30㎡ (15%)

건물구조: 3급(우급)
 우급구조의 바닥면적: 130㎡ + 40㎡ = 170㎡
 열급구조의 바닥면적: 200㎡ - 170㎡ = 30㎡
 열급면적 바닥비: 30㎡ / 200㎡ = 15%
 적용요율 = [1급요율 × 65% + 3급요율 × 20% + 4급요율 × 20%] × 1.2

예3)

1급 130㎡ (65%)	2급 30㎡ (15%)
	3급 20㎡ (10%)
	4급 20㎡ (10%)

건물구조: 2급(우급)
 우급구조의 바닥면적: 130㎡ + 30㎡ = 160㎡
 열급구조의 바닥면적: 200㎡ - 160㎡ = 40㎡
 열급면적 바닥비: 40㎡ / 200㎡ = 20%
 적용요율 = [1급요율 × 65% + 2급요율 × 15% + 3급요율 × 10% + 4급요율 × 10%] × 1.2

예4)

1급 120㎡ (60%)	4급 80㎡ (40%)
---------------------	--------------------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물건분류체계의 변경

1) 4개물건규정 → 3개물건규정

◦ 현황

물건구분	분 류 기 준
주택	-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가재
일반	-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수용동산 0 병용주택, 사무실, 백화점, 음식점, 일정규모 이하의 작업장 등
공장	- 공업상의 작업(일정규모 이상)에 사용되는 건물 및 수용동산(기계포함)
창고	- 타인의 임치기탁물의 보관에 쓰이는 건물 및 보관화물

◦ 문제점

- 현행 물건분류체계에 큰 문제는 없으나 일반물건의 창고시설로서 창고업자의 창고물건을 흡수하여 운영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창고물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분류체계상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음.

◦ 개선(안)

- 화재보험의 적용물건을 주거용물건, 상업용물건, 공업용물건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 창고물건규정을 일반물건으로 흡수함.

2) 일반물건 작업할증물건 → 공장물건

◦ 현황

-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되는 동력설비의 합계가 20kw 미만, 전력설비의 합계가 40kw 미만, 작업인원수가 늘 20인 미만의 작업장에 대하여는 일반물건 기본요율에 작업할증요율을 적용하여 인수를 하고 그 이상의 물건에 대하여는 공장물건요율로 인수함.

◦ 문제점

- 공업상에 사용되는 동력설비, 전력설비, 작업인원수에 따라 적용물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상 각 설비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 일반물건의 작업할증물건의 경우 통계자료가 적어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적절한 표준요율의 제시가 곤란한 점이 있음.

○ 개선(안)

-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절한 표준요율의 제시를 위하여 일반물건의 작업할증물건을 공장물건에 흡수함.

라. 기본요율체계의 변경

1) 주택, 일반, 창고물건의 등지요율체계

○ 현황

- 등지별 요율체계는 지역별로 화재위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역의 기후상황, 건물의 용도·구조·밀집도, 공설소방력, 공설소방력의 접근의 용이성, 화재경보장치 등의 요인을 기본요율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물건별 등지요율 격차(1등지 기준)

등지별 격차	주택물건	일반물건	창고물건
1등지	1.00	1.00	1.00
2등지	1.23	1.29	1.16
3등지	1.43	1.57	1.33
4등지	1.68	1.86	1.58

○ 문제점

- 지역의 위험을 판정하는 요인 중 건물의 용도·구조·밀집도는 기본요율체계상 반영되어 있으며, 기후상황 및 공설소방력 등은 전국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공설소방력의 접근용이성은 동일한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동일 단위지역을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름.
- 또한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요율의 지역상황에의 적용이 늦어짐에 따른 계약자의 불만이 제시될 수 있으며,
- 지역단위별 경험통계 역시 지역별 차이를 볼 수 없음.

○ 개선(안)

- 현행 등지체계를 폐지하고 전국을 단일 등지로 구분하여 요율구분요소를 줄임으로써 요율적용의 간편성을 도모함.

2) 일반물건 직업할중요율체계의 변경

◦ 현황

- 현행 일반물건의 요율적용은 건물구조급별 등지별 16개의 기본요율에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직업할중, 작업할중 또는 위험품할중을 부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따라서 일반물건의 직업할중물건에 대하여 요율적용시에는 건물의 구조급별, 등지별에 따른 기본요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직업할중을 부가하고 기타의 할인할중을 적용함에 따라 요율체계가 복잡함.
- 또한 경험통계 작성시 기본위험과 직업할중위험과의 구분이 어려워 적절한 표준요율의 산출에 한계가 있음.

◦ 개선(안)

- 직업할중요율을 폐지하고 기본요율에 직업할중요율을 부가한 요율을 기본요율로하여 요율적용상의 간편성과 경험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함.

3) 공장물건 공장중별요율체계의 변경(작업공정별요율 ▶ 최종생산품별요율)

◦ 현황

- 현행 요율적용은 하나의 건물을 기준으로 동일 건물내에 다른 제조공정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 구획되어지지 않는 한 위험이 높은 공정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동 공정요율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지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공정이 출현하는 경우 동 요율서에 해당 공정이 적기에 도입되어야 하나 요율

서에 반영하기 어려움.

◦ 개선(안)

- 제조공정별 효율을 최종생산품별 효율로 전환하여 구체적인 제조공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종생산품만을 파악하는 경우 효율적용이 용이하므로 최종생산품 제조효율로 변경함.
- 중간재(부품포함)만을 생산하는 경우 중간재를 최종생산품으로 하여 해당효율을 적용함.

마. 할증요율체계의 변경

할증제도의 의의				
○ 기본요율은 모든 물건에 일반적이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화재위험의 차이를 평가한 것이나 기본요율만으로는 해당물건의 위험실태의 차이를 공평하게 요율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 개별물건의 위험이 기본위험보다 높을 요인이 있는 경우 기본요율을 할증하여 적용하고 있음				
구 분		위험구분	할증율(%)	적용물건
할증요율	- 건축할증	- 자화위험도 수정	0.153-0.425	- 주택, 일반, 공장, 창고
	- 고층건물할증	- 자화위험도 수정	2-24	- 주택, 일반, 공장
	- 위험품할증	- 자화위험도 수정	0.06-0.6	- 일반, 공장
	- 직업할증	- 자화위험도 수정	0.032-0.799	- 일반
	- 작업할증	- 자화위험도 수정	0-1.810	- 일반
	- 동산할증	- 자화위험도 수정	0.03-0.12	- 일반, 공장
	- 손해율 할증	- 계약자별 차등	3-60	- 공장

1) 일반물건 직업할증 폐지 ▶ 기본요율화(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을 준용, 재구성)

○ 현황

- 직업할증은 건물이 영위하는 특정업종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요율에 직업할증을 부가하여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직업할증물건은 요율적용은 기본요율에 해당 요율을 선택하고 영위직종에 따라 직업할증요율을 부가하여 적용하므로 요율적용이 복잡하고,
- 통계분류상 기본위험부분과 직업할증부분의 분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표준요율을 적정하게 제시할 수 없게 됨.

○ 개선(안)

- 요율적용상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통계집적에 따른 적정한 표준요율의 제시를

위하여 직업할증요율을 직업종별기본요율로 전환함.

- 직업종별분류는 건축법상 용도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재구성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용도허가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을 인수할 수 있음.

2) 위험품할증 폐지 ▶ 기본요율화

◦ 현황

- 위험품할증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내에 위험품을 수용하는 경우 위험품 급별 및 건물구조에 따라 건물과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할증보합료를 추가하는 제도임.

건물구조급별 위험품급별	1,2급	3급	4급
A급위험품	0.060	0.100	0.150
B급위험품	0.120	0.200	0.300
특별위험품	0.240	0.400	0.600

- 일반물건의 경우 직업할증, 작업할증, 위험품 할증이 겹칠 때에는 높은 할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직업할증을 폐지하고 직업종별기본요율을 제시하고, 작업할증물건을 공장물건요율로 전환함에 따라 위험품 할증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할증율을 이중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개선(안)

- 따라서 위험품할증요율을 폐지하고 위험품이 사용 또는 저장되어지는 해당목적물에 동 할증을 반영하여 요율을 재산출하여 기본요율로 표시함.

3) 동산할증 ▶ 재고자산할증(명칭변경)

○ 현황

- 현행 요율서상 동산할증은 재고자산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이손성을 감안하여 일정의 할증율을 부가하여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요율서상 동산할증은 재고자산에 대한 할증만을 의미하므로 용어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개선(안)

- 따라서 약관상의 규정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재고자산할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의 동산급별 분류를 폐지하고 단일 할증율을 제시함.

4) 손해율할증(공장물건) 폐지

○ 현황

- 공장물건 중 공장구내의 합계 보험가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물건으로서 과거 5개년간의 손해율이 70% 이상인 물건에 대하여 3%~60% 할증하는 제도임
- FY'95기준으로 손해율할증 적용물건은 없음.

○ 문제점

- 동 물건에서 운영되는 우량물건할인제도에서 동 할인의 적용근거로서 공장구내의 위험상황에 부가하여 손해율을 산출하여 적용토록하여 구내에 대한 위험관리 및 손해경감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나,
- 화재보험은 사고발생빈도가 매우 낮으며 손해심도가 매우 높은 보험종목으로 손해율만에 의한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음.

○ 개선(안)

- 따라서 현행 손해율에 의한 할증제도를 폐지함.

바. 할인요율체계의 변경

할인제도의 의의				
○ 기본요율은 모든 물건에 일반적이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화재위험의 차이를 평가한 것이나 기본요율만으로는 해당물건의 위험실태의 차이를 공평하게 요율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 개별물건의 위험이 기본위험보다 낮은 요인이 있는 경우 기본요율을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음				
구 분	위험구분	할인율(%)	적용물건	
할 인 요 율	- 공지할인	- 유소위험도 수정	10-20	- 주택, 일반
	- 소화설비할인	- 자화위험도 수정	2-60	- 주택, 일반, 공장, 창고
	- 고액보험계약할인	-	1-10	- 주택, 일반, 공장, 창고
	- 방화문할인	- 유소위험도 수정	5-10	- 일반, 공장
	- 주방, 화상·방화구획할인	- 자화위험도 수정	5-30	- 일반
	- 관공서·학교 할인	-	10	- 일반
	- 특수건물할인	-	10-30	- 주택, 일반, 공장, 창고
	- 방위산업체 할인	-	10	- 일반, 공장
	- 불연내장재 할인	- 자화위험도 수정	5-10	- 일반, 공장

1) 불연내장재 할인 보완

○ 현황

- 구조급수가 1급 또는 2급인 건물로서 전체 내벽 및 천정 면적 중 80% 이상을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인증(FILK인증품)한 불연내장재 또는 준불연내장재로 시설한 건물에 대하여 기본요율을 할인하는 제도임.
- FY'95기준 불연내장재 할인 건수는 없음.

○ 문제점

- 현실적으로 천정 및 내벽 전체면적의 80% 이상 내장재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드물고,
- 내장재 설치시 그것이 불연내장재 또는 준불연재료 여부 및 FILK인증품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함.

- 또한 FILK인증 준불연재료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보다 내화성능이 우수하지만 FILK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불연재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할인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선(안)

- FILK인증품 내장재할인은 일반물건의 불연내장재로 한정하고 동 할인대상에서 내벽을 제외함.

2) 방화문할인 폐지

○ 현황

- 동 할인은 화재의 유소위험성에 의한 기본요율의 수정요소로서,
- 일반 및 공장목건에 대하여 3급건물 이상 건물의 모든 개구부에 대하여 방화문설비를 한 경우 기본요율을 할인(10%(1,2급건물), 5%(3급건물))하는 제도임.
- FY'95기준 할인 건수는 4건임.

○ 문제점

- 현행 방화문할인규정은 외벽의 모든 개구부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방화문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의 적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안)

- 요율의 적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방화문할인제도를 폐지함.

3) 고액할인을 적용확대 (10% ▶ 23%)

○ 현황

- 고액계약의 할인은 영업보험료를 구성하는 사업비가 보험료에 일정한 비율로

부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가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임.

- 현행 할인율은 보험가입금액 20억을 초과하여 800억원까지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용되는 고액할인율은 최종보험료의 1% ~ 10%까지 적용되어지고 있음.

◦ 문제점

- 보험가입금액이 800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80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계약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액계약에 대한 국문요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개선(안)

- 현행 고액계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할인율을 확대함.
- 할인율은 기존의 가입금액에 대한 할인율을 800억원 초과에 대하여 확장시켜 산출함.

< 보험가입금액별 할인율 >

보험가입금액	할 인 율
20억원초과 50억원까지	최종보험료의 2%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최종보험료의 4%
10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최종보험료의 6%
2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최종보험료의 8%
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최종보험료의 10%
1000억원초과 2000억원까지	최종보험료의 12%
2000억원초과 5000억원까지	최종보험료의 15%
5000억원초과 1조원까지	최종보험료의 19%
1조원초과	최종보험료의 23%

4) 소화설비할인의 변경

◦ 현황

- 소화설비할인은 소방법상 설비기준보다 강화된 소화설비규정에 의거 소화설비 할인검사(화협대행)에 합격한 설비가 있는 경우 5%~ 60%까지 기본요율을 할인하는 제도로써 주요구성품을 방재시험연구소의 인증품(FILK인증품)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할인율의 10%~20%(소화기의 경우 기본요율의 3%)를 추가하여 할인하여 주고 있음.

○ 문제점

- 주요구성품이 FILK인증품인 경우 추가할인율이 적용요율의 10%~20%로 소화설비 제조회사의 FILK인증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설비의 성능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소화설비에 대한 국가검정제도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화설비의 충분한 소화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더욱 크게 됨.
- 따라서 소화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FILK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 개선(안)

- 추가할인율을 삭제하고 주요구성품이 FILK인 경우에만 할인율 적용하되 그 적용시기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물건에 대하여 적용함.
- 그 이전에 시설된 물건에 대하여는 현행 할인율제도를 유지함.

사. 특정물건 요율체계의 변경

1) 특정물건 요율적용을 기본요율과 분리 별도 요율 제시

◦ 현황

- 특정물건은 기본물건을 분류할 수 없는 특수한 물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특정물건에 따라 기본물건요율을 준용하고 할인할증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동 요율은 특정물건의 성격에 따라 건물구조급수를 규정하고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기본요율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해당 특정물건의 요율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특정물건의 경험통계에 의한 표준요율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개선(안)

- 따라서 특정물건의 요율을 별도로 제시하여 요율적용상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경험실적에 따라 적정한 표준요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특약요율체계의 변경

1) 물건별 특약요율체계를 물건과 별도의 부분으로 분리 정리

◦ 현황

- 특약요율은 기본계약의 물건분류에 따라 각각 요율이 제시되어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 현행 물건별 특약요율 제시형태는 동일한 물건규정내에서 기본위험요율 및 특약위험요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나 물건별로 동일한 특약요율의 경우 각 물건에서 모두 규정하지 않고 요율서 분류상 앞에서 제시된 특약요율은 해당물건에서 앞 물건 규정을 참조토록 하고 있어 앞 물건의 특약요율규정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안)

- 따라서 물건에 관계없이 별도의 장으로 특약의 표준요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함.

2) 특약신설에 따른 요율신설(주택화재)

◦ 신설(안)

- 기존 일반화재보험의 특약을 주택화재보험에 도입함에 따라 특약요율을 신설함.
- 신설된 특약의 요율은 기존의 특약요율을 준용함.

3)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요율체계의 변경

◦ 현황

- 현행 동 특약의 적용요율은 기초요율에 약정복구기간계수 및 면책기간계수를

급하여 산출하고 있음.

적용요율=기초요율×약정복구기간계수×면책기간계수

$$\text{기초요율} = \frac{\text{화재요율1} \times \text{바닥면적1} + \text{화재요율2} \times \text{바닥면적2} + \dots}{\text{바닥면적1} + \text{바닥면적2} + \dots}$$

※기초요율계산시 석유화학공장 및 석유정제공장은 할증계수 적용가능

약정복구기간계수 : 석유공업과 비석유공업에 따른 계수 적용

면책기간계수 : 면책기간설정(7일~30일)에 따른 계수 적용

○ 문제점

- 최근들어 기업들은 재산의 직접손실뿐만 아니라 재산의 손실로 인한 기업의 휴지위험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실정임.
- 그러나 이러한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요율산출이 모집조직에서 용이하여야 하나 기업휴지위험의 성격상 적용요율산출이 비교적 어려운 실정임.
- 기업휴지위험에 적용할 요율은 재물위험요율을 기초로하여 산출되며, 이 기초요율은 위험구획단위 또는 하나의 건물단위의 화재보험요율을 각각의 바닥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므로 요율산출상 바닥면적을 반드시 계산하므로 복잡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안)

- 기초요율 산출시 바닥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물위험의 가입금액으로 가중평균한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 재물위험에 실손보상특약이 첨부된 경우에는 재물위험의 보험가입금액은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실손보상계수로 나눈 금액으로하여 계산토록 함.
- 기업휴지위험에 대하여도 실손보상개념을 도입하고, 석유공업물건과 비석유공업물건으로 구분되어 있던 약정복구기간계수를 단일화함.

【제 3 주제】

배상책임보험 표준요율개선작업내용 및 시사점

대 한 화 재 (주)

화특부 과장 손 진 호

I. 주요개정 내용

1.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재보험자 구독요율 사용근거 마련

: 영문약관 적용계약, 표준요율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별약관 적용계약 및 표준요율적용 대상이나 요율을 표준화하기가 곤란하여 개별요율이라 기재된 위험에 대하여는 재보험자 구독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

2. 요율서

(1). 통칙규정

1) 요율의 적용범위

- 국문배상책임보험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보험 표준요율 적용
(기존 규정과 동일)

※ 배상책임보험요율 이원화 방지를 위한 영문약관의 국문배상책임보험 표준요율 준용규정은 차후 배상책임보험약관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재검토 예정

2) 요율의 조건

- 요율이 없는 경우 유사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요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일반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개별요율로 재보험자 구독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록 하며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타보험과 일치를 위하여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

3) 표준요율 적용대상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추가신설

- 현재 보상한도액의 증액에 따른 인상계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종목은 배상책임보험과 근재보험임.
- 근재보험의 경우는 공사요심위('81.12.15, '82.11.24)의 인상계수 산출공식(보상한도액 구간별 인상계수의 변동폭 제시)에 따라 1인당/1사고당 1억5천만원/30억원 → 5억원/50억원으로 확대인가(재무부 손보 제2234-376, '89.7.28)된 바 있음.
-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의 인상계수는 '88. 7. 5(재무부 손보 2234-288) 1인당/1사고당 1천만원/3천만원 → 1억원/10억원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 ⇒ 배상금액의 인상추세로 인해 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액의 증액필요성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1인당/1사고당 5억원/30억원 수준으로 변경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구간별 변동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상계수의 증감에 일정추세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한도액 증액구간별 인상계수를 구함.
- * 향후과제 : 배상책임보험의 전산화작업이 완결되면 경험통계에 의해 인상계수 조정 예정

보상한도확대에 따른 인상계수 신설

구 분	보상한도액		비 고
	현 행	개 정 (안)	
시설소유자등 A표사용 8개특약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1인당 5억원 1사고당 30억원	사고당, 인당보상한도 확대 신설
B표 사용종목 (도급, 선주, 유도선)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1인당 5억원 1사고당 10억원	거대위험의 특성상 인당 보상한도만 확대 신설
곤도라·도로운 송배상	1사고당 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	사고당 보상한도 확대 신설
건설기계업자	1사고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사고당 보상한도 확대 신설

4) 단일보상한도액(CSL)에 의한 계산방법의 변경

- 현행의 CSL계산방식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기본요율에 보상한도액인상계수를 적용한 보험요율중 낮은 요율에 10%를 할인한 단일요율에서 자기부담금할인계수를 빼는 형태로 되어 있어 자기부담금의 증액시 보험료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불합리성이 있음.
- 따라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기본요율에 보상한도액 인상계수와 자기부담금할인계수를 적용한 보험요율중 낮은 요율에 20%를 할인하여 계산된 각각의 요율을 합산한 단일요율을 구한 뒤, 보험료산출기초수를 곱하여 적용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CSL에 의한 계산방식의 비교

- 대상 : 면적 330㎡인 백화점
- 조건 : BI a.o.p. 500, a.o.o 500 PD 500

1) ded 10일 때

◦ 현행방식

$$\{(235\text{원} \times 1.0) + (31\text{원} \times 1.14 \times 0.9)\} \times \{(1-0) \times 100\} = 26,680.6\text{원}$$

◦ 변경방식

$$\{235\text{원} \times (1.0-0) \times 100\} + \{31\text{원} \times (1.14-0) \times 100 \times 0.8\} = 26,327.2\text{원}$$

2) ded 20일 때

◦ 현행방식

$$\{(235\text{원} \times 1.0) + (31\text{원} \times 1.14 \times 0.9)\} \times \{(1-0.03) \times 100\} = 25,880.2\text{원}$$

◦ 변경방식

$$\{235\text{원} \times (1.0-0.018) \times 100\} + \{31\text{원} \times (1.14-0.015) \times 100 \times 0.8\} = 25,867\text{원}$$

3) ded 30일 때

◦ 현행방식

$$\{(235\text{원} \times 1.0) + (31\text{원} \times 1.14 \times 0.9)\} \times \{(1-0.05) \times 100\} = 25,346.6\text{원}$$

◦ 변경방식

$$\{235\text{원} \times (1.0-0.031) \times 100\} + \{31\text{원} \times (1.14-0.024) \times 100 \times 0.8\} = 25,539.2\text{원}$$

4) ded 50일 때

◦ 현행방식

$$\{(235\text{원} \times 1.0) + (31\text{원} \times 1.14 \times 0.9)\} \times \{(1-0.1) \times 100\} = 24,012.5\text{원}$$

◦ 변경방식

$$\{235\text{원} \times (1.0-0.061) \times 100\} + \{31\text{원} \times (1.14-0.049) \times 100 \times 0.8\} = 24,772.2\text{원}$$

5) ded 100일 때

◦ 현행방식

$$\{(235\text{원} \times 1.0) + (31\text{원} \times 1.14 \times 0.9)\} \times \{(1-0.2) \times 100\} = 21,344.5\text{원}$$

◦ 변경방식

$$\{235\text{원} \times (1.0-0.122) \times 100\} + \{31\text{원} \times (1.14-0.098) \times 100 \times 0.8\} = 23,217.2\text{원}$$

- 변경방식은 자기부담금액이 10만원, 20만원인 경우는 보험료부담이 경감되며 자기 부담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보험료부담이 늘어나게되나 자기부담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20만원이하가 70%에 이르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은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영업배상책임보험 공제금액별 계약분포

공제금액	계약건수	비율	보험료	비율
10만원	587	69.5%	265,564,170	63.2%
20만원	17	2.0%	8,138,330	1.9%
30만원	129	15.3%	82,833,440	19.7%
50만원	105	12.4%	37,735,430	9.0%
100만원	6	0.7%	11,655,370	2.8%
500만원	1	1.2%	14,514,000	3.5%
계	845	100.0%	420,440,740	100.0%

주) 자료 : D사 '95. 4 - '95. 9, '96. 1 - '96. 3(9개월간)

5) 확정보험료의 표시

보험료적용상의 편의를 위해 현행 원단위 절사에서 10원단위에서 절사로 변경

6) 최저보험료의 변경

현행 1보험계약당 최저보험료는 2,000원이나 배상책임보험이 기업성보험이라는 점과 '90년대들어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 매 계약당 5,000원으로 상향조정함. 실제 5,000원이하 보험계약은 보험료기준으로 전체의 0.0048%에 불과함.

보험료 1만원이하 영업배상책임보험

(단위 : 원)

보험료	계약상황	계약건수	비율	납입보험료	비율
2천원이상 5천원미만		56	2.6%	200,530	0.0048%
5천원이상 1만원미만		29	1.4%	224,347	0.0054%
총 계		2,144	100%	4,162,846,540	100%

주) 자료 : ○ 사 '95. 4 - '95. 9, '96. 1 - '96. 3(9개월간), 제일사 '95. 4 - '95. 12(9개월간)

7) 장 · 단기계약

공사기간별로 보험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도급업자특약이나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의 구간운송특약 등의 경우 장단기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

8) 분납특약요율 신설 : 2분납 3%할증, 4분납 5%할증

* 구간보험의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법정이자율 적용

9) 임대인의 요율적용방법 신설

- 현행 요율서에 따르면 빌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과 점유자(임차인)의 요율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 민법의 배상책임법리에 따르면 공작물(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시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임대인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양자간에는 위험의 차이가 나타나게됨.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등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따라서 현행 빌딩의 임대인과 점유자의 효율수준을 비교하여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도 임대인에 대한 효율수준을 조정함.

-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의 효율수준비교

◦ 현재 시설소유자특약의 전산개발미비로 효율산출기초인 면적의 분포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계약이 6600㎡(2000평)이하이며 전구간에 분포한다고 가정할 시 점유자와 임대인의 효율은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음.

- 대인 : 임대인 효율은 점유자효율의 69.8%

- 대물 : 임대인 효율은 점유자효율의 154.3%

◦ 따라서 임대인의 효율은 점유자효율을 대인의 경우 30%할인, 대물의 경우 50% 할증

임대인과 임차인의 요율수준비교

구분		점유자(㉠)	임대인(㉡)	비율(㉡/㉠)
1320㎡ 이하시	대인	68,750	59,844	87.0%
	대물	9,375	18,281	195.0%
1700㎡ 시	대인	89,121	59,844	67.1%
	대물	12,364	18,281	147.9%
4,950㎡ 시	대인	259,500	177,000	68.2%
	대물	36,000	54,000	150.0%
6,600㎡ 시	대인	346,000	236,000	68.2%
	대물	48,000	72,000	150.0%
평균	대인	190,843	133,172	69.8%
	대물	26,435	40,641	154.3%

(2) 영업배상책임보험

가.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요율

- 1) 기존의 일반시설요율표에 자동판매기, 약국, 기숙사, 모텔하우스, 사진관, 세탁소, 화물용엘리베이터, 자동보도,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등의 요율신설

* 자동세차기의 경우 반드시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첨부토록 함

- 2) 기존의 일반시설외에 유아놀이시설, 낚시터, 주유소 등의 요율신설

- 3)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약요율 신설

- 4)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약요율 신설

* 일반시설 및 유아놀이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되 유아놀이시설의 보험료계산시 8,000원을 기본보험료로 함.

나. 도급업자특약요율

- 1) 가스설비공사, 상·하수도공사, 파이프라인공사, 원예 및 조경작업, 배달업 등의
요율신설
- 2) 보험료의 기간은 도급계약서상 도급공사기간을 기준하되 연간포괄계약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신설.
- 3) 요율산출기초 명확화 :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명시

다. 임차자특약, 화재배상특약요율

- 보험료규정 통일 : 화재보험요율서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보험료(자유요율제의 시
행에 따른 범위폭을 적용하기 이전의 보험료를 말함)의 90% 해당액.
- * 화재보험요율서는 표준요율만 준용토록 하고 자유요율적용은 배상책임 요율서
에 의해 적용

라. 학교경영자특약요율

1) 적용대상 학교의 범위확대

학교의 범위는 교육법 및 유아교육진흥법등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하며 위에 특별하
게 분류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함.

2) 장애인학교의 요율신설

: 장애인학교의 경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보다 위험율이 높을 것으로
추산되나 보험의 공익성을 고려 유아원수준의 위험율을 준용

마. 차량정비업자 특약요율

자동차관리법의 변경에 맞춰 정비업종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세분하고 새로이 편입된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요율을 신설

바. 주차장 특약요율

1) 적용단위의 세분화 : 기존의 실내·외구분외에 2단주차기, 기계식주차기, 카리프트의 요율 신설

2) 면적의 적용방법 명확화

- 주차장내에 2단주차기, 기계식주차기 또는 카리프트(카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설면적을 실내·외 면적에서 제외한다.
- 주차장에 2단주차기, 기계식주차기 또는 카리프트(카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내·외 면적에 의한 보험료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 콘도라운영자 특약요율

1) 빌딩용콘도라 요율신설 : 기존의 아파트용 콘도라외에 일반빌딩용 콘도라 요율 신설

2) 보상한도액 등의 적용방법 세분화

-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만을 별도로 담보하고자 할 경우 단일보상한도액에 의한 보험료의 70%해당액을 적용한다.
- 자기부담금 중액시의 할인율신설

아. 건설기계업자 특약요율

1) 요율적용규정 명확화

- 건설기계유형분류 명확화
- 자기부담금 증액시의 할인율신설
- 6종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명시

2)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약요율 신설

자. 생산물배상책임담보특약요율

1) 음식물, 건강보조식품의 요율신설

- 내수용생산물 및 손해사고기준
- 보상한도(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 : 1억원, 10억원, 10억원
- 판매인 추가특약첨부시 A.P. 없음.

2) 완성작업위험의 요율신설

- 내수용생산물 및 손해사고기준
- 보상한도(1사고당, 총보상한도) : 5억원
- 승강기 및 주차시설의 설치·해체·수리·점검 및 보수작업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해체·수리·점검 및 보수작업

차. 기타배상책임특약요율의 신설

1)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약요율

2) 교차배상책임 특약요율

- 3) 대위권포기 특약요율
- 4) 인격침해담보 특약요율

(3) 전주배상책임보험

- 1) 승객의 제3자담보특약요율의 신설
- 2) 보상한도액 인상계수의 적용방법 명확화
 - 관습상의 비용담보특약의 경우에는 인상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유·도전사업자배상책임보험

- 1) 할증율적용대상 유도선의 수정
 - 선령 16년이상의 목선 또는 합성수지선→선령 15년초과의 목선 또는 합성수지선
 - 선령 20년이상의 강선→선령 20년초과의 강선
- 2) 승객의 제3자담보특약요율의 신설
- 3) 보상한도액 인상계수의 적용방법 명확화
 - 관습상의 비용담보특약의 경우에는 인상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5)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1) 적용상의 유의사항 신설

기존에 표준요율적용제외대상이었던 냉동차, 유류가스 및 액체물체 운송 탱크로리의 경우, 최종산출보험료의 50%를 할증하여 인수가능토록 변경함.

2) 구간운송특약요율의 적용규정 명확화

- 기존의 운송보험요율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필요부분을 명기하여 요율적용상의 편의도모.
 - 자동차운송 전후에 환적(지게차, 리어카, 엘리베이터, 콘도라등의 운송 및 계단을 통한 도보운송을 포함)될 경우에는 1회(3일간 한도)마다 0.006%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컨테이너(TOP-CAR포함)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최종적용요율의 2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차량이 트랜스포터로 운송될 경우에는 최종적용요율의 1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6)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1) 임차자특약요율의 적용방법 명확화

- 화재보험요율서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보험료(자유요율제의 시행에 따른 범위폭을 적용하기 이전의 보험료를 말함)의 90% 해당액.

2) 적용상의 유의사항 신설

현재 보험인수실무상 가스용량이 m'로 표시된 경우 1m'를 10k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는 관행을 요율서에 명기하여 보험인수의 편의도모.

(7)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1) 일부업종의 추가 및 삭제

- 승마장, 사격장의 요율을 신설하고 오락장요율을 영업배상으로 이전함.

2) 요율적용규정의 수정

- 체육도장의 범위를 삭제하여 법정체육도장이 아닌 경우에도 인수가능토록 함.
- 골프장의 매출액 기준을 50억까지에서 45억초과로 변경하여 50억초과시에도 인수 가능

3) 주차장요율의 적용방법수정 : 영업배상의 주차장특약과 동일구조로 변경

4)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요율의 신설

3. 기타사항

가. 통계집적을 위한 분류코드 명기

- o 분류 위험별, 특약별 분류코드 명기
- o 구독요율적용 위험에도 분류코드 명기

나. 근재보험 보상한도액 인상계수의 조정

- o 인당 배상책임액의 고액화에 따른 계약자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
- o 보상한도액 인상계수의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를 기본보험료에서 차감·조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부담보험료는 동일

II. 개정 효과

1. 배상책임보험 공정경쟁기반 조성

- 표준요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표준화가 가능한 위험에 대한 요율을 신설함에 따라 공정경쟁질서의 기반을 조성 대부분의 계약에 대하여 요율구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보험인수가 가능
- 배상책임보험 표준요율 적용범위
 - 보험료기준 : 38.5% → 54.4%
 - 계약건수기준 : 73.2% → 96.0%

(계약건수기준)

(단위 : 건)

구 분	현 행		개 선 후	
	건 수	비 율	건 수	비 율
표 준	29,631	73.2%	38,837	96.0%
구 득	10,821	26.8%	1,615	4.0%
계	40,452	100.0%	40,452	100.0%

(보험료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개 선 후	
	보험료	비 율	보험료	비 율
표 준	18,380	38.5%	25,932	54.4%
구 득	29,313	61.5%	21,761	45.6%
계	47,693	100.0%	47,693	100.0%

자료 : 재보험특약 실적 기준

2. 요율의 적응성제고

- 요율통칙, 단일보상한도액의 계산방식 합리화, 요율적용방식의 명확화 등으로 표준요율의 요율적용성을 제고

3. 경험통계 확보기반 마련

- 표준요율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가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량의 신뢰성이 확보되며 표준화에 따른 통계처리가 용이하고 표준요율적용 비대상에 대하여도 위험별로 Code를 부여하여 경험통계 집적의 기반을 마련

4. 보험인수 절차의 간소화 및 U/W활성화

- 표준요율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에 대하여 요율구득 절차 없이 신속한 보험인수가 가능하고 인수자가 직접 요율을 산출함에 따른 U/W능력 배양

【제 4 주제】

기술보험 표준요율개선작업내용 및 시사점



대 한 재 보 (주)

화재부 과장 최 호 룡

I. 작업추진방향

기술보험 요율산출의 원수사 이관에 따른 공정한 가격경쟁의
유도 및 상품판매력의 제고

-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의 활성화 도모
 - 원보사에 의한 요율산출 및 적용을 확대함으로서 국내 원보사의 언더라이팅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
- 전자기기보험등 국문약관 및 요율 신설을 통하여 모집조직의 적극적인 보험판매 유도
 - 모집조직에서 이해하지 쉬운 형태의 국문약관 및 요율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상품판매를 유도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
- 대형물건 또는 고액계약자에 대한 기존계약을 표준요율로 수용하기 위한 요율의 탄력성 제고 및 상품구성의 원활화
 - 표준담보기간 확대, 고액물건할인, 보상한도액 특약등을 도입하여 요율운용의 탄력성 제고하고 특약을 신설하여 요율의 적정성 유지와 상품구성의 원활화를 도모함
- 보험요율 계산방법을 개선하여 요율적용의 합리화 도모
- 보험목적물의 제정의 또는 규정의 명확화를 통하여 적용상의 혼란 예방

II. 주요 개정내용

1. 약관 (이하 국문약관에 관한 사항임)

< 공사보험 >

가. 보통약관 (조립보험)

- 촉매, 냉매, 용매, 윤활유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을 보험의 목적의 제외대상에
서 삭제 따라서 이와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여 부보할
수 있음(독일식 약관과 일치)

나. 특별약관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별약관은 추가약관으로 명칭 변경)

1)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기술보험 전체)

- 최고통지 관련 약관개정에 따른 조정 (단, 공사보험은 구간계약임을 감안하
여 보험료 분납비율 및 납입일시를 명시하지 않음)

2) 방화시설에 관한 추가약관 (개선, 조립)

- 현행 방화시설에 관한 특별약관과 보험의 목적의 보관에 관한 특별약관을
통합 (건설공사 방화시설에 관한 특별약관과 일치시킴)
- 보관단위당 공지거리 확보 50m → 20m 변경

3) 내륙운송 및 보관중담보 특별약관 (신설, 조립)

- 건설현장 이외의 지정된 지역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피보
험자의 통제·보관 및 보호하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자재 또는 재산의 손해
를 보상

4) 중고변압기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신설, 조립)

- 중고변압기에 대한 시운전 또는 시험가동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5)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신설, 건설)

-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 손실이 예상되는 제3자 소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첨부하며, 제3자 배상 책임이 담보될 경우에 한하여 첨부 할 수 있음
- 계약자로부터 시설물 명칭, 시설물 소유자, 굴토선으로부터 최단거리, 굴토깊이 명세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요율을 산정하며, 사고당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담보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

6) 자연재해 부담보 특별약관 요율 (신설, 공사보험)

- 지진, 홍수, 범람, 폭풍(Beaufort scale (풍력등급 : 0 ~ 12등급으로 분류) 8등급 이상)과 이로 인한 수해(水害)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부담보

7) 지하매설물에 관한 추가약관 (신설, 조립)

- 공사개시전에 관련기관에 피보험자가 지하에 배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 보상
또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위 시설물의 수리비용에 한함

8) 지하매설물 시공관리에 관한 추가약관 (신설, 조립)

- 지하배관, 지하배선, 지하통로 시설등에 폭풍, 비, 홍수, 범람으로 인하여 흩어나 모래가 쌓이거나, 패어나가거나, 배관이나 배선이 떠오르는 손실등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한 사고당 최대 ()Km 까지 제한 보상

9) 농작물, 산림등에 대한 부담보 추가약관 (신설-조립, 개정-건설)

- 조립공사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 등에 대한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 부담보 (문화재 부담보에서 제외)

10)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추가약관 (신설, 조립)

- 강우, 홍수 및 범람으로 인한 직·간접손해 또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전 보험기간과 건설현장에 대하여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11)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신설, 공사보험)

- 같은 형태의 기계나 장비에 설계결함, 재질 및 구조의 결함, 작업상의 졸렬 (조립상의 잘못은 제외)등과 같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사고 횟수에 따라 차등 보상

12) 심정(깊은우물)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신설, 건설)

- 심정(깊은우물)공사의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명시

13)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신설, 건설)

-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의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명시

14) 수상공사물건 추가약관 (신설, 건설)

- 수상공사의 공사현장의 기상대와의 연락체계, 뱃길로 부터의 보호장치등을 안내

15) 장기계약 특별약관 (삭제, 기계)

- 보험료 미납입시 “보험료납입 최고”의 문제점으로 인한 삭제

16) 대형전동기 추가약관 (신설, 기계)

- 대형전동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17) 가스터빈 연도설비에 관한 감가상각 조정 추가약관 (신설, 기계)

18) 심정펌프 및 수중펌프 유지관리 추가약관 (신설, 기계)

19) 각종 터빈 및 터보 발전기 세트 유지관리 추가약관 (신설, 기계)

20) 보일러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추가약관 (신설, 기계)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변경

1) 보험가입금액 1,000억원 초과시 구득요율 사용근거 마련

- 일정규모(1증권당 가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 이상의 위험에 대하여는 재보험자 구득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2) 표준요율적용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의 조정 효과

(표 1) FY95 기술보험 보험가입금액 1000억원 이하 계약현황

(실적기간 94 - 96)

(금액단위 : 억원)

구 분		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	전자기기
계약건수	건수	1191	7752	1399	-
	비율(%)	80	99	97	100
보험료	금액(억)	270	394	877	-
	비율(%)	50	47	81	100

자료) 대한재보(주) 특종부제공

3. 요율서

1) 요율의 적용범위

- 국문, 독일식 약관 이외의 (영문)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담보내용을 감안, 표준요율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 (보험가입금액 1,000 한도내에서 다수 약관-1요율 체계 유지 단, 개별 요율 제외)
- 표준요율서에 없는 요율은 유사요율을 사용하며 유사요율이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요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적용지역은 대한민국 전역과 해외물건도 이 요율로 인수 가능

2) 보험의 목적물 제정의

- 조립보험 : 보험목적물을 설치후 사용될 장소에서의 조립공사로 한정
 - o 적용예) 일반기계를 제작하는 경우에 금속가공 또는 세공산업의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일반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을 조립하는 경우에만 적용(선박용 엔진등 일반기계에 대한 요율은 요율서에 별도로 정하였음)

3)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 설정방법의 보충

< 공사보험 >

- o 공사목적물 : 보험의 목적이 완성된 시점의 제조달가액
- o 잔존물제거비용 :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재물손해 요율을 적용 단,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공사물건별 보험가입금액의 5% 이내로 설정 필요

- 주위재산 : 총보상한도액을 설정
- 공사용가설물 및 공사용공구등 : 공사원가에 손료만 반영되는 반복사용재를
신품으로 보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조달가액으로 설정
- 건설 및 조립용 기계 : 신조달가액

○ 촉매 : 종류별 가액 (조립)

< 기계보험 >

- 현행과 동일

4) 보험의 목적의 명기사항 (공사보험)

-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명세,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공구, 건설 및 조립용 기계, 촉매에 대하여 그 명칭, 수량 및 개별보험가입금액 등을 보험증권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5) 단기계약 (기술보험 전체)

- 화재보험 단기요율과 일치시킴
(단, 기계 및 전자기기의 경우 1회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통산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기간에 단기요율 적용 - 현행과 동일)

6) 장기계약 일시납 요율(신설 - 기계, 전자기기)

- 1년 초과 3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 해당계약자의 1년간 요율을 계산하여
이에 장기계약의 단기요율표 적용

7) 계속계약보험요율신설 (신설 - 기계, 전자기기)

- 적용대상 : 1년 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중도 해지후 갱신의 경우에는 제외)
- 요율 : 5% 할인 가능

8) 보험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변경

- 공사보험 : 0:00부터 24:00
- 기계, 전자기기 : 16:00부터 16:00

9) 추가보험료 계산 및 기본요율의 조정

<조립보험>

가) 보험기간 중도의 보험기간연장

- 조립기간의 연장에 따른 보험기간의 연장 : 기존계약에 적용한 요율에서 조립기간 담보요율만을 분리한 후 (아래 라)항 참조) 일할계산하여 적용 단, 표준조립기간(주)내에서 조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지 아니함.
- 시운전기간의 연장에 따른 보험기간의 연장 : 기존 계약에 적용한 요율에서 시운전기간 담보요율만을 분리하여 계산하여 적용함 단, 전체 4주내에서 시운전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지 아니함
- 조립기간과 시운전기간을 동시에 연장하는 경우 : 각각의 추가보험료를 합산
- 기존계약에 적용한 보험요율의 분리방법

$$\circ \text{ 조립기간담보요율 : (기존계약요율} - \text{MR)} \times \frac{\text{ER}}{\text{ER} + \text{TR}}$$

$$\circ \text{ 시운전기간담보요율 : (기존계약요율} - \text{MR)} \times \frac{\text{TR}}{\text{ER} + \text{TR}}$$

※ MR : (확장)유지담보요율 또는 보증기간담보요율

(즉, 보험기간 연장과 위험이 무관한 유지담보요율은 차감)

ER : 기존계약의 적용요율 산정시 반영된 조립기간담보 기본요율
(조정후)

TR : 기존계약의 적용요율 산정시 반영된 시운전기간담보 기본요율(조정후)

- 기간연장 배서일 현재 손해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할증 가능

나) 예정조립기간(주)이 표준조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본요율 조정

- 보험기간이 요율표의 표준담보기간 미만인 경우 또는 시운전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요율은 할인하지 아니함
- 예정조립기간이 표준조립기간을 초과하거나 시운전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본요율을 조정.

① 조립공사기간 초과에 따른 기본요율의 조정

$$\begin{aligned} \text{○ 조정후 기본요율} &= \{(\text{기본요율} - \text{시운전기간연장요율(1개월)}) \\ &\quad \times \{1 + \frac{\text{예정조립기간(월)}}{\text{표준담보기간} - 1\text{개월}} - 1\} \times 60\% \} \\ &\quad + \text{시운전기간연장요율(1개월)} \end{aligned}$$

② 시운전기간 초과에 따른 기본요율의 조정

$$\begin{aligned} \text{○ 조정후 기본요율} &= \text{기본요율} + \text{시운전기간연장요율(1개월)} \\ &\quad \times \frac{\text{예정시운전기간(월)} - 1\text{개월}}{\text{표준시운전기간} - 1\text{개월}} \end{aligned}$$

- 보험기간이 표준담보기간보다 짧거나 보험기간 종료전에 실제공사가 완료되어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주) 용어의 사용 예)

- 표준담보기간 (현행의 표준최장기간 또는 기본담보기간에 해당)
- 표준조립기간 : 조립공사의 경우 표준담보기간을 표준조립기간과 4주간의 표준시운전기간 (표준담보기간이 12개월일 경우 표준조립기간은 11개월)
- 예정조립기간 : 조립공사의 경우 공사목적물의 공사에정기간

<건설공사보험>

가) 보험기간 중도의 보험기간연장

- 표준담보기간내에서 조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음.
- 기간연장 배서일 현재 손해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할증 가능

나) 예정조립기간이 표준조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본요율 조정

- 예정공사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을 조정

$$\text{조정후 기본요율} = (\text{기본요율} \times \{1 + (\frac{\text{예정공사기간(월)}}{\text{표준담보기간}} - 1) \times 50\% \})$$

- 보험기간이 표준담보기간보다 짧거나 보험기간 종료전에 실제공사가 완료되어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하지 않음

<기계보험>

- 현행과 동일

10) 요율의 기준

- 기본요율

- o 일괄요율 신설 :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기계·기구를 모두 부보하는 경우
(명세는 자산대장으로 같음) - 기계보험, 타보종은 현행과 동일

- 용어의 변경

- o 적용요율 → 기준요율

11) 최종요율의 계산과정 (신설)

- 아래의 순서에 따라 최종요율을 계산함

가) 기준요율의 산정 (기본요율에서 표준담보기간에 따른 기본요율 조정, 자기부담금, 특약등을 감안하여 산정)

나) 고액물건 할인

다) 표준요율 수정폭 적용 (자유요율 운용범위에 의하여 수정)

라) 보험료 분납할증요율 적용

마) 최종적용요율의 단수처리

12.) 기준요율의 산정

<조립보험>

- 공사물건요율, 건설 및 조립용 기계요율, 축매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 미리 각 부문별로 해당보험료를 구하고 요율을 계산

$$\text{가) 공사물건요율(\%)} = \text{해당보험료} \div \text{해당보험가입금액(주1)} \times 100$$

- 해당보험료 =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 + 공사용가설물 및 공구의 보험가입금액 + 주위재산 보상한도액 + 잔존물제거비용 보상한도액) × 재물손해요율 +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

× 배상책임요율 + 가산보험료

※ 재물손해요율 = 기본요율(주2) × {1±각 특약에 따른 할인(증)율(주3)}
× {1±Σ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증)율}

※ 배상책임요율 = 기본요율(주2) × 배상책임한도액에 따른 할증율 × {1
±특약에 따른 할인(증)율(주4)} × {1+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증율}

※ 가산보험료 : 아래의 특약들을 추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 항공운임담보특별약관
- 중고변압기 시운전담보 특별약관

나) 건설 및 조립용기계요율(%)= 해당보험료 ÷ 해당보험가입금액(주5) × 100

· 해당보험료 = Σ [건설 및 조립용 기계별 보험가입금액 × 기본요율(주
6) × {1±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증)율}]

다) 촉매요율(%)

· 해당보험료 = [Σ촉매 보험가입금액 × 해당요율]

주1)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공사용가설물 및 공구의 보험가입금액
+주위재산보상한도액+잔존물제거비용보상한도액"

주2) 보험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 조정 후
사용

주3) 기본요율에 대한 할인(증)율을 적용(곱셈)하는 특약.

주4) 교차배상책임특약에 따른 할증율.

주5) 건설 및 조립용기계별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주6) "건설 및 조립용기계담보특별약관"규정에 따른 기계류집단별 기본요

율

<건설공사보험>

- 공사물건요율, 건설 및 조립용 기계요율로 구분하여 산정

$$\text{가) 공사물건요율(\%)} = \text{해당보험료} \div \text{해당보험가입금액(주1)} \times 100$$

- 해당보험료 =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공사용가설물 및 공구의 보험가입금액+잔존물제거비용 보상한도액)×재물손해요율+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요율 + 가산보험료

$$\begin{aligned} \text{※ 재물손해요율} &= \text{기본요율(주2)} \times \{1 \pm \sum \text{각 특약에 따른 할인(증)율(주3)}\} \\ &\times \{1 \pm \text{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증)율}\} \end{aligned}$$

$$\begin{aligned} \text{※ 배상책임요율} &= \text{기본요율(주2)} \times \text{배상책임한도액에 따른 할증율} \times \{1 + \\ &\text{특약에 따른 할증율(주4)}\} \times \{1 \pm \text{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증)율}\} \end{aligned}$$

※ 가산보험료 : 아래의 특약들을 추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항공운임담보특약
-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담보 특약
- 주위재산담보 특약 등

$$\text{2) 건설 및 조립용기계요율(\%)} = \text{해당보험료} \div \text{해당보험가입금액(주5)} \times 100$$

- 해당보험료 = $\sum [\text{건설 및 조립용 기계별 보험가입금액} \times \text{기본요율(주6)} \times \{1 \pm \text{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증)율}\}]$

주1)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공사용가설물 및 공구의 보험가입금액+잔존물제거비용보상한도액"

주2) 보험기간이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을 조정하여야 함

주3) 기본요율에 대한 할인(증)율을 적용(승산)하는 특약.

- 주4) 교차배상책임특약, 진동·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약에 따른 할증율
- 주5) 건설 및 조립용기계별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 주6) 건설 및 조립용기계담보요율에 따른 기계류 집단별 기본요율

<기계보험>

가. 기준요율(%) = 해당보험료 ÷ 총보험가입금액 × 100

나. 해당보험료 = $\sum$ [사업장(기계형태)별 보험가입금액 × 사업장(기계형태)기본요율 × {1±자기부담금에 따른 할인(증)율(주1)} × {1± $\sum$ A형 특약의 할인(증)율(주2)}] ± $\sum$ B형 특약에 따른 가산보험료(주3)

- 주1) 기본요율에 대한 자기부담금중(감)액에 따른 할인(증)율은 해당 사업장 또는 개별기계설비별로 계산
- 주2) 특약의 요율중 기본요율에 대한 할인(증)율을 적용하는 특약
- 주3) 항공운임담보특약, 주변재산 및 제3자 배상책임 담보특약등 별도의 가산보험료를 적용하는 특약 단, 추가요율은 해당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산출하여 해당 총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하여 산출

13) 요율적용상의 유의사항

<조립보험>

- 잔존물제거비용, 주위재산담보, 토목공사, 공사용가설물 및 공사용 공구에 대하여는 각기 설정된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에 조립공사별 재물손해요율을 적용
- 해체공사 물건 (공장별, 단위시설물건별, 개별기계별)에 대해서는 이와 동일한 용도의 조립공사물건(공장별, 단위시설물건별, 개별기계)별 기본요율의 110%~130%를 적용
- "탄화수소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Ⅰ) 및 (Ⅱ)"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촉매

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보험가입금액을 명기하여 인수

<건설공사보험>

- 철거공사만을 부보할 수 없음
- 잔존물제거비용, 공사용가설물 및 공사용 공구에 대하여는 각기 설정된 보험 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에 조립공사별 재물손해요율을 적용

< 기계보험 >

- 해당사항 없음

14) 자기부담금의 적용방법

가) 최저자기부담금

< 공사보험 >

- o 사고형태(유지보수 · 시운전 · 자연재해/기타/배상책임) 및 보험가입금액 따라 달리 설정
(단, 연간포괄계약인 경우에는 해당보험증권에서 담보가능한 공사계약중 가장 큰 공사물건의 최종완성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최저자기 부담금과 표준자기부담금을 설정)

※ 여기서 말하는 보험가입금액은 조립보험에서는 "공사목적물의 보험가입 금액+공사용가설물 및 공구의 보험가입금액 +주위재산보상한도액+잔존물제거비용보상한도액"이고 건설공사보험은 위에서 주위재산보상한도액을 제외

- o 건설 및 조립용기계 : 손해액의 10%와 500,000원 중 큰 금액

o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공제방법

여러종류의 보험의 목적이 손상되거나 특별약관에 의한 추가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자기부담금을 각각 공제.

예시 - 조립보험의 경우)

- 공사목적물
- 제3자 배상책임

- 보증기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 건설 및 조립용기계
- 촉매
- 항공운임 등

< 기계, 전자기기보험 >

- 기계 : 300,000원으로 일원화, 전자기기 : 100,000원

나) 표준자기부담금 및 적용자기부담금의 설정금액에 따른 할인(중)

< 공사보험 >

- 공사목적물 및 배상책임

- 기준 : 사고형태(유지보수 · 시운전 · 자연재해/기타/배상책임) 및 보험가입금액 따라 달리 설정됨

○ 할인(중)방법

- 사고형태별로 다른 비율로 설정할 경우 유지보수 · 시운전 · 자연재해/기타에 대하여는 평균 할인(중)율을 적용하고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인(중)율을 적용
- 증(감)액 비율이 할인(중)율표 사이에 속할 경우 직선보간법 사용

※ "시운전, 자연재해, 유지보수"에 대한 적용자기부담금은 "기타 및 "배상책임"에 대한 적용자기부담금보다 적게 설정할 수 없음

※ 상 · 하한선을 도입하여 보험가입금액이 적은 계약은 적용자기부담금을 아주 낮게 설정할 경우 요율할증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고액계약일수록 적용자기부담금을 크게 설정함에 따라 요율인하 가능성이 커짐

- 건설 및 조립용기계

- 기준 : 손해액의 10%와 500,000원 중 큰 금액
- 할인(중)방법 : 500,000원에 대한 비율로 계산함

< 기계 >

- 현행과 동일 다만, 상하한 금액 신설

15) 고액물건 할인

- 보험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이 20억(기계, 전자기기), 50억(공사보험)원 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
단, 보험기간중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변경후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재조정

16) 표준요율의 수정

- 현행 각위험단위별에서 → 이 요율서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료(율) 즉 최종요율단수처리전 요율에서 수정(업무편의 도모)

17) 최종요율의 단수처리

- 보험요율 산출에 관계되는 제요소를 감안하여 계산하고 최후로 단수정리함

18) 특별약관 및 추가약관의 적용방법

- 「기본요율표」의 필수첨부특별약관이나 담보하는 위험의 인수방법에 명기되어 있는 특별약관은 반드시 첨부하여 인수함

19) 일부 특약의 요율수정 및 요율신설

(수정)

- 동맹과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요율
 - o 현행 조립공사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 재물손해 기본요율 5%에서 사고당 보상한도액에 대하여 재물손해 기본요율의 50% 적용 (건설공사보험 동일)
 - o 인수한도 : 보험가입금액의 15% 이하 (권장사항)
- (확장)유지담보요율
 - o 담보기간 : 현행은 12개월 → 24개월 까지

- 요율 : 현행 12개월까지에 대하여 기본요율의 10% → 24개월까지 유지기간에 따라 다단계로 할증할 수 있도록 조치
 - 특별비용담보요율
 - 재물손해 기본요율의 5%로 설정 (조립, 건설 동일)
 - 제작자결함담보요율 (조립, 변경)
 - 현행 재물손해 기본요율의 10%에서 각 목적물별로 달리 적용
 - 설계결함담보요율(건설, 신설)
 - 공사형태별로 10 ~ 20% 까지 적용
 - 주위재산담보요율(건설)
 - 인수방법 : 주위재산의 명세를 기록하고, 총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인수. 또한,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손해액의 20%와 해당 보험계약에서 설정한 재물손해담보 부문의 “기타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중 큰 금액으로 함
 - 요율 : 가산보험료로서 진동담보특약을 첨부한 경우의 배상책임담보 요율(주)을 공사목적물 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
- 주) 배상책임담보 요율 산정시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은 주위재산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으로 간주하여 적용.
- 보증기간담보요율
 - 재물손해 기본요율의 25%로 설정
 - 건설 및 조립용 기계 담보 특별약관
 - 위험등급을 없애고 요율을 단순화
 - 내륙운송 및 보관중담보 특별약관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신설)
 - 재물손해 기본요율의 15%로 설정, 또한 공사현장에서 하역위험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3% 적용 (조립보험)

- 재물손해 기본요율의 10%로 설정, 또한 공사현장에서 하역위험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2% 적용 (건설공사)

- 중고변압기 시운전 담보 특별약관

- 현행 기본요율의 10%에서 중고변압기 자체에 대한 신품대체가격의 20%로 설정

(신설)

- 항공운임담보요율(조립, 건설 동일)

- 인수한도 : 증권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이내
- 요율 : 가산요율로서 항공운임 보상한도액의 15%로 설정

- 공사완료물건담보요율(건설)

- 인수방법 : 공사물건중 일부가 완공되어 부분적으로 사용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 부분의 완성가액에 요율을 적용
- 요율 : 기존보험요율에 일할요율의 70%로 설정

-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요율 (건설)

- 가산요율로서 시운전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기간 1개월당 기계설비 가액의 0.05% 적용

- 탄화 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I) 요율(조립)

- 탄화가공산업의 경우 과열, 균열, 개질등의 사고를 부담보하는 약관
- 탄화가공산업의 경우 이 특약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물손해 기본요율의 25%를 적용

-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II) 요율(조립)

- 탄화 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I)을 첨부할 경우에만 첨부가능
- 요율 : 가산요율로서 촉매제의 보험가입금액에 1%로 설정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

- 적용대상 :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

화로 물적손실이 예상되는 제3자 소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하며, 제3자 배상책임이 담보될 경우에 한하여 첨부 가능.

- 인수방법 : 계약자로부터 시설물 명칭(주), 시설물 소유자, 굴토선으로부터 최단거리(D), 굴토깊이(H) 명세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요율을 산정하며, 사고당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담보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

주) 시설물 명칭 :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 소유시설물의 명칭

- 요율 :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할증율을 배상책임요율에 적용하여 산정
단, 할증율의 적용범위는 최소 100%에서 최대 300%로 함
 - 할증율 : 주위의 각시설물에 대하여 $(H \div D)10(\%)$ 를 구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산출.
 - 요율계산식 : 배상책임요율 $\times [\sum\{\text{각시설물의}(H \div D)10\}] \%$

-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요율

- 공사보험 연 5%를 단리로 적용
- 기간보험(기계, 전자기기)은 2회 3%, 4회 5%를 적용

-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요율 (조립, 건설 동일)

- 한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
- 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재물손해기본요율의 5 ~ 15% 할인 적용

-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요율 (조립, 건설 동일)

- 재물손해기본요율의 5% 내에서 적용 가능

- 자연재해 부담보 특별약관 요율

- 재물손해기본요율의 10% 할인 적용 (조립, 건설 동일)

20. 기본요율의 적용상의 유의사항 또는 변경사항

< 조립보험 >

- 적용상의 유의사항

- 요율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건설공사, 주변시설등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일괄부보험

- 주요개정사항

- 표준요율 신설, 유사목적물 통합, 표준요율 적용범위 확대, 보험목적물의 재정의 등
- 배상책임담보 한도 확대 (5억 → 50억) 및 요율계산방법 건설공사에 일치

< 건설보험 >

- 적용상의 유의사항 :

- 둘 이상의 용도와 성격이 다른 건축물 또는 공사(예 : 터널, 교량등을 포함한 도로공사)를 일괄 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해당공사요율을 적용 단, 공사별 보험가입금액을 분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요율 적용

- 주요개정사항

- 표준요율 신설, 요율조정, 유사목적물 통합 및 간소화, 표준요율 적용범위 확대, 보험목적물의 재정의, 위험차별요소등 추가(굴착공사 방법등) 등
- 배상책임담보 한도 확대 (8억 → 50억)

< 기계보험 >

- 주요개정사항

- 표준요율 신설, 기계류 추가
- 사업장별 일괄요율 신설

4. 전자기기 보험 국문 약관 신설

가. 전자기기 국문보통약관 신설

- 1) 일반조항
- 2) 재물손해조항
- 3) 외적정보매체담보 조항
- 4) 추가작업비용 담보조항

나. 전자기기보험 국문특별약관 신설

- 1)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 2)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 3) 항공운임담보 특별약관
- 4) 도난(Theft)위험담보 특별약관
- 5) 차량탑재장비 및 구외 이동성장비담보 특별약관
- 6) 밸브 및 튜브담보 특별약관
- 7)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 8) 태풍담보 특별약관
- 9) 홍수, 범람위험 부담보특별약관
- 10) 신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 11) 화재손해 신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 12)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 13) 화재, 폭발, 낙뢰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14) 기계적·전기적 사고 부담보 특별약관
- 15)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 16) 공동보험 특별약관
- 17)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 18) 환율 특별약관
- 19) 공기조화설비에 관한 추가약관
- 20) 사다리, 비계 설치비용 부담보 추가약관
- 21) 건축수리비용 부담보 추가약관
- 22) X-Ray 필름에 관한 추가약관
- 23) 생산중단기기(부품)의 복구기간 제한담보 추가약관
- 24) 복구지연 제한담보 추가약관
- 25) 유지보수계약에 관한 추가약관

5. 전자기기 보험 표준요율 신설